

재난관리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음 성 군

재난관리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의 개요

1. 연 혁

- 설치 근거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
- 설치 및 조성 목적 :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
- 설치연도 등
 - 2005. 1. 11 조례제정
 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

2. 기금조성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'06년도 운용현황		'06년말 현재액	'07년 운용계획			'07년도말 추정액	비 고
수입	지출		수입	지출	증감		
410	205	1,411	515	350	165	1,576	

3. 사업내역(세항별)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비 집행실적			사업기간	사업형태	비고
	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(%)			
계	220	205	93			
초천소하천 정비공사	55	55	100	2006	보조사업	
천방이소하천 정비공사	86	86	100	2006	"	
소석소하천 정비공사	59	59	100	2006	"	
재해복구 물품구입비	20	5	25	2006	자체사업	

II. 기금의 존치분석

1. 총 평

-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: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군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주 목적이 있음
- 사업의 중복성·유사성 : 본 기금사업은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전예방차원에 주안점을 둔 반면에 일반회계 예산은 사후복구, 유지보수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의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됨.
- 재원조성의 적정성 :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충당되며 재원조성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- 종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활동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존치 하여야 함.

2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- 기금의 설치목적(표 2-1)

(표2-1)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비 고
○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○ 음성군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	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	○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·정비를 요하는 사업 ○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○ 소하천 및 하천시설 정비사업 ○ 재난의 예방사업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

사업명	계 획	집 행	달 성 도	비 고
계	220	205	93	
소 하 천 정 비 사 업	200	200	100	
재 해 복 구 물 품 구 입 비	20	5	25	

○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
감사 등의 지적사항(표 2-2)

(표 2-2)

구 분	지 적 내 용	비 고
각종감사	'04 지적사항 없음	
지적사항	'05 "	
	'06 "	
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권고	"	
기 타	"	

○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: 해당없음

○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
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
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(표 2-3)

(표 2-3)

사 업 명	'06년 사업비	이 유	불가피성 정도
초천소하천 정비공사	55	10년간 기금의 적립으로 기금의 안정성 및 일반예산으로 사업시행 시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의 안정성 저해	상
천벵이소하천 정비공사	86		상
소석소하천 정비공사	59		상
재해복구 물품구입비	5		상
합 계	205		

3. 사업의 중복성·유사성

○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<표 3-1>

<표 3-1>

구 분	사 업 명	금 액	비 고
기 금	소 하 천 정비사업 등	205	
일반·특별회계 예산사업	없음	-	
타 기금	없음	-	

○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<표 3-2>

<표 3-2>

구 분		기금사업(금액)	일반·특별회계 예산사업(금액)	기금운용관 입 장
기금운용계획심의 시 지방의회 지적사항('05)		없음	없음	없음
각종 감사 지적사항	'04	"	"	"
	'05	"	"	"
	'06	"	"	"
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권고		"	"	"
기 타		"	"	"

○ 기금과 예산간의 역할분담 기준 및 조정방안(기 조정내역 포함)

4. 재원조성의 적정성

(표 4-1)

구 분		'04		'05		'06		'07		비고
수입	합 계	1,161	100%	1,446	100%	1,616	100%	1,926	100%	
	출연금	225	19.3	248	17	260	16	271	14	
	보조금	80	7	80	5	100	6	175	9	
	기금사업수입									
	이자수입	35	3	37	3	50	3	69	4	
	예치금회수					270	17	1,385	72	
	전년도이월액....	816	70.3	1,081	75	936	58			
										
	기 타	5	0.4					26	1	
지출	합 계	1,161	100%	1,446	100%	1,616	100%	1,926	100%	
	고유목적사업비	80	7	240	17	200	12.4	350	18	
	인건비									
	물건비									
	용자금									
	차입금상환									
	재적립금(이월금)	1,081	93	1,206	83	1,411	87.3	588	31	
	예치금							988	51	
	예탁금									
	기 타					5	0.3			

※ 비율(%)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(예- 출연금/합계)

5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
- 사전대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본 기금이 사전예방사업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재난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.
-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: 없음

Ⅲ. 기금 사업별 성과분석

1. 총 평

1. 주요사업 추진실적

○ 기금 조성실적

- 출 연 금 : 763백만원(1997~2006)
- 도비보조금 : 180백만원(2001~2006)
- 이자수입 : 128백만원(1997~2006)
- 기 타 : 808백만원(2002~2005)

합 계 : 1,879백만원(1997~2006)

2. 기금사업 집행실적

-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실적 : 468백만원

○ 지출내역(2005~2006)

2005년 동산소하천유지보수공사외 4건 240백만원

2006년 초천소하천 정비공사외 3건 205백만원

3. 잘 된 점

- 재해 예방사업으로 수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
-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
-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

4. 미진사항 및 문제점

- 농번기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

5. 향후 조치계획

-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계획을 모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
2. 사업의 운영성과

2006 재난관리기금사업

가. 사업개요

- ①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: 사전재해 예방
- ② 추진근거 및 경위
 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
 -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
- ③ 사업내용 개요

사 업 명	사업비 (백만원)	사업기간	사업 형태	사 업 내 역	비고
계	205				
초천소하천 정비공사	55	'06. 4. 3~ '06. 5. 4	보조	축제공L=166m 호안공L=166m	
천뱅이소하천 정비공사	86	'06. 4. 3~ '06. 5.17	"	호안블럭L=264.5m 하상보호공1개소	
소석소하천 정비공사	59	'06. 4. 5~ '06. 5.26	"	전석쌓기 H=1.8m L = 338m	
재해복구 물품구입비	5	'06. 8. 2~ '06. 9.18	자체	'06. 7.28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응급복구용자재구입 (삽,장갑,우의 등)	

④ 사업내역(필요시 세세항 사업별로 작성)

사업형태	사업명	계획	집행	달성도	비고
총 계		220	205	93	
보조사업	초천소하천정비공사	55	55	100	
	천뱅이소하천정비공사	86	86	100	
	소석소하천정비공사	59	59	100	
자체사업	재해복구물품구입비	20	5	25	

⑤ 2006년도 주요 사업내용 변경사항 : 해당없음

나. 사업내용의 적정성

①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

- 사업목적의 적정성 : 재해예방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민원해소에 기여
- 사업내용의 적정성 :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사업 특성상 우기전 사업대비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과 달리 재해취약지를 보완하여 피해재발을 방지하는데 있기에 사업내용도 사업목적에 부합됨

②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·투명성

-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개괄적 기술
기금사업특성상 기금담당부서에서 일괄처리하나 일반회계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함.
-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

사업대상 및 수혜자의 경우 사전에 각 읍면별로 기금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실사를 통해 기금사업지를 선정하여 도 현지점검반의 재실사 작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사업지를 선정하게 됨.

다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2005년도			2006년도		
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240	240	100	220	205	93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분	사업계획(백만원)	사업실적(백만원)	달성도(%)
'05년	○동산소하천정비공사(28)	○동산소하천정비공사(28)	100
	○가산소하천정비공사(80)	○가산소하천정비공사(80)	
	○하촌소하천정비공사(25)	○하촌소하천정비공사(25)	
	○안터소하천정비공사(27)	○안터소하천정비공사(27)	
	○구성소하천정비공사(80)	○구성소하천정비공사(80)	
'06년	○초천소하천정비공사(55)	○초천소하천정비공사(55)	93
	○천방이소하천정비공사(86)	○천방이소하천정비공사(86)	
	○소석소하천정비공사(59)	○소석소하천정비공사(59)	
	○재해복구물품구입비(20)	○재해복구물품구입비(5)	

- 정성적 평가

- . 수해예방으로 농경지 보호
- . 소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재해예방 및 주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최소화

-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: 당초계획대로 목표 달성함

라.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

1) 개선노력 1

- (1) 제목 및 핵심내용 : 안정적인 기금확보로 기금사업의 확대
로 인한 수혜의 폭을 늘림.
- (2) 도입배경 및 동기 : 충분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재
난발생시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

(3) 추진경위 및 절차 :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
기금의 이자율 극대화를 위한 방안 강구

(4) 개선효과 : 안정적 기금운용과 사업에 따른 집행의 효율
성 제고

마. 기타 특이사항 : 의견없음

3. 자산의 운용성과

가. 자산운용개선노력

-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만기
이자지급식 장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, 이와는 별도로 운
용기금은 기금집행시기에 맞게 환매채로 예치하여 운영함.

나. 기금운용자금의 연간수익률

○ 운용수익률

- 평잔수익률(상품별 연 수익률을 일일운용잔액을 기준으로
가중 평균하여 구한 수익률) : 3.9%

▷ 2006정기예금 현황

종 류	계 좌	예탁금액	예치일	만기일	이율(%)	비고
"	392-03-011425	1,202,995,866	'06. 3.16	'07. 3.16	3.9	
"	392-03-011412	270,000,000	'06. 3.16	'06. 5.16	2.8	
"	392-03-000308	182,224,229	'06. 6. 7	'07. 6. 7	3.9	

2006년도 평잔수익율 (단위:원)

$$\begin{aligned} & \{ [1,202,995,866\text{원} \times (291\text{일}/365\text{일})] \times 0.039 + [270,000,000\text{원} \times \\ & (62/365\text{일})] \times 0.028 \} + [182,224,229\text{원} \times (208/365\text{일})] \times 0.039 \\ & \div \{ 1,202,995,866 \times (291\text{일}/365\text{일}) + 270,000,000\text{원} \times (62/365\text{일}) \\ & + 182,224,229\text{원} \times (208\text{일}/365\text{일}) \} = 3.9\% (42,738,966 \div 1,108,806,674) \end{aligned}$$

○ 통합관리기금 활용실적 : 해당없음

다. 공유재산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 : 해당없음